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 |
|----------|------|
| 의안 번호 | 1776 |
|----------|------|

2017년 4월 2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4월 10일, 서영진 의원 외 24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4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택시 복장 통일시 택시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과 함께 택시 업계에서는 통일된 복장의 의무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바, 이에 한시적으로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통일된 복장을 지원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업에 한시적으로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7. 4. 11~ 1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 업계의 운수종사자 복장 통일 및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반영과 택시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 조례의 재정지원 사업에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부·보조 사업의 경우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¹⁾ 사항을 반영하여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정일 2014.05.28. / 시행일 2016.01.01.

- 서울시는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운수종사자 복장비를²⁾ 포함한 바 있으나, 법인택시 255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³⁾ 결과 복장을 미지급한 회사가 187개사(7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지급 사유로는 비용부담, 운수종사자의 잦은 입·퇴사, 운수종사자 반발, 세탁 등 유지·관리 어려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참고 :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미착용 사유

| 구분 | 비용부담 | 운수종사자의 잦은 입·퇴사 | 운수종사자 반발 | 세탁 등 유지·관리 어려움 | 기타 |
|------|-------|----------------|----------|----------------|------|
| 회사 수 | 72개사 | 72개사 | 59개사 | 35개사 | 18개사 |
| 비율 | 38.5% | 38.5% | 31.6% | 18.7% | 9.6% |

- 다만, 법인택시 업계의 경우 운수종사자 부족과 이에 따른 미운행 택시 발생, 택시 이용 승객수요 확대 한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수종사자 복장에 대한 서울시의 별도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7년 편성된 서울시 예산 중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개선사업’으로 16억 10백만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운수종사자 복장비(1인당 2만원/년 × 2벌) : 267원/대/일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2.15 ~ 25
- 조사대상 : 법인택시 255개사 관리자
- 조사방법 : 법인택시조합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복장착용 여부, 선호복장 종류, 건의사항 등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부 칙

제3조(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제10조제1항다목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생략) 가. ~ 나.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p> <p>제1조~제2조 (생략)</p> | <p>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p> <p>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p> <p><u>제3조(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제10조제1항다목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